

**2015학년도 제1차**  
**<제317차 이사회 회의록>**

2015. 4. 25.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5학년도 제1차

### 〈제31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0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1 인

1. 일 시 : 2015. 4. 25.(토) 11:10 ~ 11: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5년 4월 17일)

2. 장 소 : 아주자동차대학 본관동 제1회의실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 사 : 추호석, 윤성복, 문길주,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선용 (7인)
- 감 사 : 배홍기 (1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 분 중 일곱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심의안건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제317차 이사회 심의 안건은 학법대우 제15-77호(2015.4.17)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의안 제2호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매입 대금 기채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7. 심의내용

##### 제 1 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12.23자 제309차 이사회에서 기 승인해주신 광고 도시지원시설 9-2 구역 부지 매입에 관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5.3.3부 해당 부지의 수의계약 공급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우리 법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우선 매매계약에 대한 신청예약을 진행하고 추후 교육부 허가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종전 이사회에서는 9-2 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 부지의 매입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9-2 구역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향후 우리 법인과 산하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의 구역감정가는 29,742,585,000원으로 평당 약 680만원입니다. 이는 광고 신도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교하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며, 특히 6월 30일까지 일지납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일 기준으로 5%의 선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토지 매입 총액은 분양대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299억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본 안건은 제2호 의안에서 심의할 100억원의 기체를 제외한 약 199억원의 금액을 법인의 기금을 처분하여 토지매입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당부지를 활용하여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며, 요양병원 운영(안)은 오래전부터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협의하였기에 부지 매입 후 수익창출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의 설립 후 정상운영 기준 당기순이익률은 약 7.0%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법인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여러 신규사업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에 대한 분양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수익용재산(기금) 처분 승인(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현재 2% 이하의 저금리 예금 상품을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법인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향후 교지 확장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기금 처분을 통한 부지 매입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 내용**

**1. 처분대상 기금현황**

기관명	계좌번호	예치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원)
외환은행	809-019888-468	2015.03.05	2016.03.07	2.10%	500,000,000
우체국	104604-11-289153	2015.03.17	2016.03.17	1.95%	5,200,000,000
우체국	104604-11-289490	2015.03.20	2016.03.20	1.95%	7,500,016,050
우체국	104604-11-289757	2015.03.25	2016.03.25	1.92%	5,024,000,000
국민은행	705215-00-21999	2014.11.07	2015.05.07	2.22%	2,184,000,000
			합 계		20,408,016,050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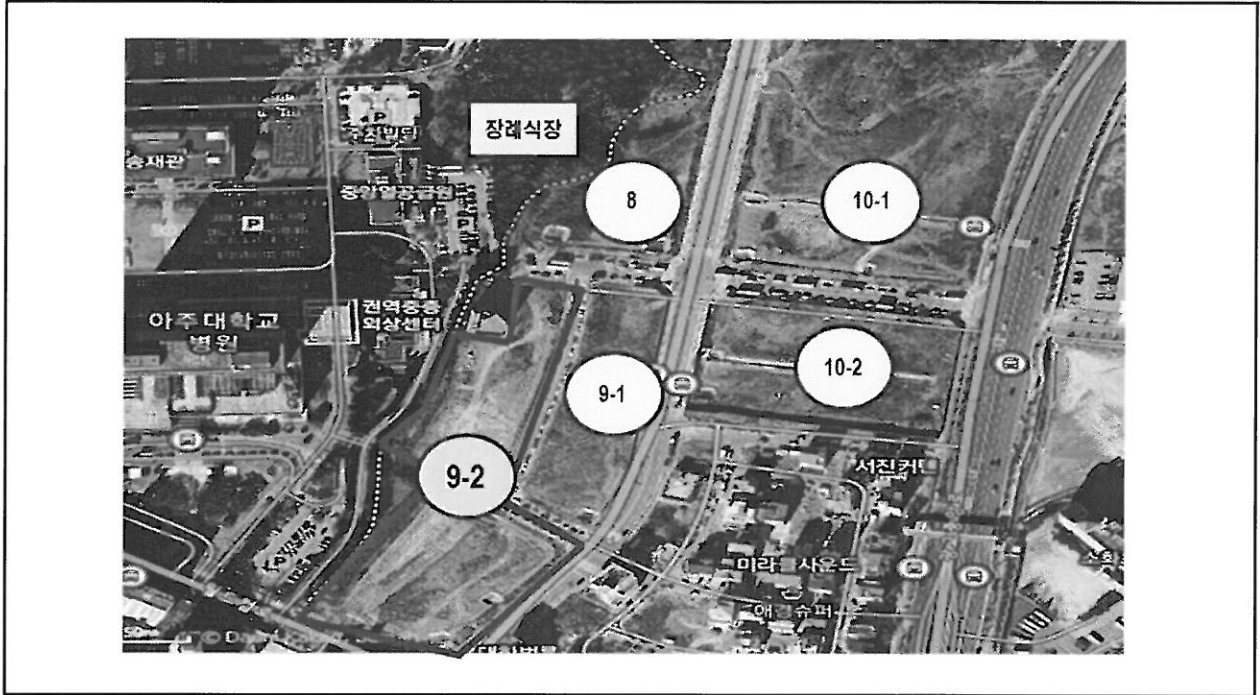
신 상 행

이사

이 영 현

2. 처분에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 등

▶ 위치



▶ 광고 도시지원시설 9-② 토지매입 예상비용 : 29,929,825,740원 (14,412.6㎡ / 4,359.8평)

구분	토지대금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	기타	계
일시납	27,433,052,930원	1,261,920,430원	1,234,487,380원	365,000원	29,929,825,740원

☞ 상기 토지대금은 2015.6.30 납부(예정)기준 선납할인을 반영한 금액으로 토지매입 총 비용은 실제 토지대금 납부기준일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음.

▶ 경기도시공사 토지 분양가 : 29,742,585,000원

▶ 기금 처분에정금액 : 19,929,825,740원

☞ 토지대금 선납할인 후 실제처분액이 예정금액 이하로 산출될 경우 차액은 재예치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광고 도시지원시설 토지 매입) 대체취득

제 2 호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매입대금 기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매입대금 기채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앞서 의결해 주신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 매입비용 총 299억원 중 100억원은 금융기관의 기채를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서 타 금융기관들이 요구한 담보설정의 조건없이 무보증 신용의 조건을 제안하였으며, 금리도 그동안의 거래를 고려하여 타 금융기관이 제시한 3.5 ~ 3.9% 보다 저렴한 연 3.40%의 금리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차입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추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법인의 상환 능력에 부담되지 않는 기채 규모로 판단됩니다. 이외 자세한 기채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 생협

이사

이영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변동금리 조건인데 향후 금리변동에 대비하여 조기상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임이사 이영현 : 변동금리의 금리변동에 대비하여 추후 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매입 부지의 개발계획 시기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오랜기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으며 많은 요양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기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 문 길 주 : 법인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 없이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조건으로 협의되었다는 점에서 기재 내용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매입대금 기재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기재 승인 내용

- 차입 예정액 : 10,000,000,000원
- 차 입 기 관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금 리 : 연 3.40% (1년 단위 변동금리)
- 상 환 방 법 : 10년 원금 균등 상환
- 담 보 조 건 : 무담보 신용

8.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17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이사장님과 이영현 이사님 그리고 신상협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석이사 7인 전원이 박상일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 9. 폐회선언

이 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17차 이사회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11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5 년 4 월 25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사	배 홍 기	배 홍 기